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김기덕 의원 외 11명
- 의안번호 : 제657호
- 발의일자 : 2019년 5월 22일
- 회부일자 : 2019년 5월 24일

2. 제 안 이 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'19. 7. 1.부터 기존 '장애등급제'가 폐지되고 '장애정도' 기준이 도입되어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 구분에서 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'(기존 1~3등급)와 '심하지 않은 장애'(기존 4~6등급)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됨.
- 이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입장료 감면 규정에 새로 도입된 '장애정도'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공원 입장료 감면 규정에 인용된 장애등급(1급에서 3급까지)을 '장애정도'로 표현을 수정함(안 제20조제1항제2호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 선 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「장애인복지법」에 ‘장애 등급제’가 폐지되고 ‘장애정도’ 기준이 도입되었음. 등록 장애인을 구분할때 기존 6등급(1~6등급) 구분에서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’(기존 1~3등급)와 ‘심하지 않은 장애’(기존 4~6등급)의 2단계로 변경되었음. 이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입장료 감면 규정에 새로 도입된 ‘장애정도’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.

나. 검토의견

1) 장애등급제 개편 주요내용

- 장애인등급제는 1988년 시행되어 30년간 유지해온 것으로 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」 [별표 1]과 같이 1급~6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도이며, 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, 언어 등 총 16개 분류에 따라 각각 장애등급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음.
- 장애인 등급제도는 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을 분류하는 등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한 부분이 있었으나, 장애인이 등급이 명확히 분류되지 못하여 개별 장애인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.
-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(18~22년)에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및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구분을 단순화하였으며, 활동지원서비스가 최대 3급까지 지원하도록 제한된 것을 변경하여 개인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.

2) 법령 개정의 진행사항

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‘장애등급’을 ‘장애정도’로 변경(제32조, 제32조의 8)한 것은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 15270호에 개정되었고, 2019년 7월 1일 시행하도록 되어있음.
-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또한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9450호에 따라 ‘장애 등급’에 관한 조항을 ‘장애정도’로 개정하였으며, (제31조제1항제1호)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이 지난 6월 4일 개정됨에 따라(보건복지부령 제628호) ‘장애정도’를 명시하는 내용의 상위법령 개정이 완료되었음.(2019년 7월 1일 시행)

3)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동 조례의 적용

- 상위법에서 ‘장애등급’제가 ‘장애정도’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요청하였음. (행정안전부 공문 2019. 4. 29 문서번호: 자치법규과-1015)
- 동 조례 제20조에 ‘장애인(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 및 보호자1인)’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, 상위법 개정예 따라 ‘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’을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.